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46857, 2022가단30002(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1. 1. 22.

접수 제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2.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6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D은행의 소외 C에 대한 판결금채권(부산지방법원 2010가단47076)을 양수하여, 2021. 11. 10. 현재 원고는 소외 C에게 861,682,758원3)의 금전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나. C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21. 1. 21.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인 C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아파트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선의의 제3자인 E조합이 순번 4. 아파트 전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기에 피고는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결이유 간략화에 대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이장형

1) 주문 제1항은 2021가단46857 사건의 주문이다.

2) 주문 제2항은 2022가단30002(병합) 사건의 주문이다.

3) 원금 잔액 177,666,894원, 인수이자 잔액 591,492,816원, 인수 후 이자 잔액 92,523,075원